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요약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약 893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설계사 인력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요건, 수급요건,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세밀한 설계가 요구됨

1. 주요 내용

-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4차 산업혁명 후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특고·예술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 수정하고, “특고”의 정의 규정을 신설 대신 “노무제공자” 적용 내용을 규정함
 - 개정법률안에서는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되는 소득기준, 적용 대상 직종, 보험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약 893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인력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생명보험, 손해보험,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각각 연간 291억 원, 246억 원, 356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4대 사회보험 적용 시에는 연간 1조 1,589억 원(생명보험 3,520억 원, 손해보험 3,010억 원, GA 5,06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보험회사가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고정비용 절감을 통해 상쇄시킨다고 할 경우, 약 7,035명의 설계사가 해촉될 것으로 예상됨
 - 예상되는 해촉 설계사 규모는 현행 설계사 인력(41만 3,895명)의 1.7%에 해당함

〈표 1〉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영향

(단위: 명, 십억 원)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	합계
전속설계사 인력	88,986	92,139	232,770	413,895
고용보험 적용 시 추가비용 ¹⁾²⁾	29.1	24.6	35.6	89.3
예상 인력조정 규모 ¹⁾²⁾	2,240	1,960	2,835	7,035

주: 1) 2019년 전속설계사 인력 및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고용보험료 부담액을 추정함

2) 현행 보험료율(1.6%)을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

2. 평가

- 보험시장에서 설계사 조직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설계사 조직 위축이 예상됨

-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요건, 수급요건,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가입요건) 보험설계사는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모집활동에 종사한 비중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38.2%, 53.3%에 불과할 정도로 이직이 빈번하므로, 기금 안정성 차원에서 일정기간 등록을 유지한 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수료 체계하에서는 유지수수료보다 판매수수료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설계사가 본인 소득수준을 자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일부 존재함
 - (운영 방식) 고용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설계사와 사용자 간 보험료 부담 비율 설정, 가입대상 설정, 교차설계사에 대한 제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제도가입 의무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수렴이 필수적임

김동겸 연구위원
dgkim@ki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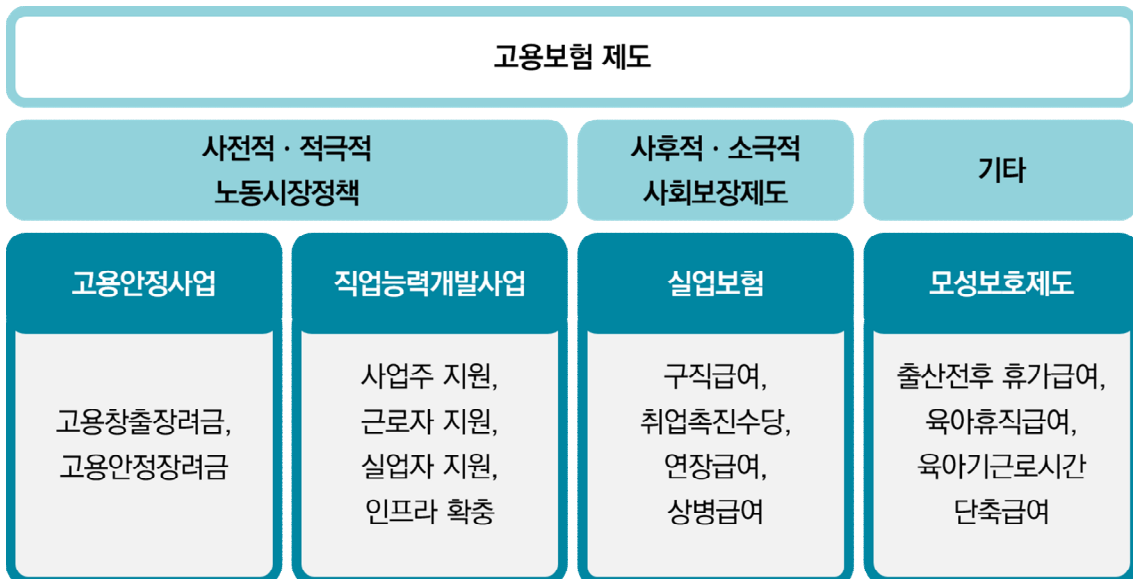
별첨: 고용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적용 확대 시 영향

1. 고용보험제도

가. 제도개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7월에 도입됨
 - 정부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편,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을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2001년 11월 육아휴직 급여(월 20만 원)와 산전후 휴가 급여(상한액 135만 원)가 신설된 이후 적용대상과 지급수준이 꾸준히 확대되어 옴

〈그림 1〉 고용보험 제도의 운영형태



-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실업급여사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였으며,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함
 - (가입대상)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함
 - (급여수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 수준이며,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함
 -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충격이 지속되자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2019년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49.8% 수준임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가족이 무급으로 고용한 비임금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큼

〈그림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경제활동 인구: 2,822만 명(2019년 8월 기준)					
실업자 86만 명	취업자: 2,736만 명				
	비임금근로자 (24.9%)	임금근로자(75.1%)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 제외1) (6.5%)	공무원 등2) (5.4%)	미가입자 (13.8%)	가입자 (49.4%)
법적 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주: 1)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하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3) 괄호 안의 값은 취업자 수 대비 비중임

자료: 노동연구원(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입법발의안

-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음¹⁾
 -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보험료) 규정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을 통해 세부 관련 내용을 규정함
 -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고·예술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의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 수정하고, “특고”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노무제공자” 적용 내용을 규정함
 - 특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것은 특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고 직종별 근무형태가 다양하며, 산재보험법상 특고의 정의²⁾와 구별하여 규정하고자 함

- [적용대상]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토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³⁾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운영 방식]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분담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함

-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한편,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함
 - 출산전후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도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7.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2008년 7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2012년 5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2016년 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2020년 7월) 등 총 14개임

〈표 1〉 직종별 고용보험 운영형태 비교

구분		근로자 (1995년 도입)	자영업자 (2012년 도입)	예술인 (2021년 시행 예정)	특고(案)
가입대상		근로자	근로자 미고용 또는 50인 미만 사업주	예술인 (단기예술인 포함)	특수직 종사자 (적용직종 시행령위임)
적용 제외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임의가입	-	-
	소득기준	-		일정소득 미만자	일정소득 미만자
	연령기준	65세 이후 신규가입		65세 이후 신규가입	65세 이후 신규가입
운영 방식	부과기준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기준보수 선택 (7등급 세분화)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보험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 1.6% 고용안정·직업능력 : 0.25~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 2.0% 고용안정·직업능력 :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 시행령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 시행령 위임
	분담비율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비율 분담(50%)	전액 본인부담	시행령 위임	시행령 위임
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지급사유	비자발적 이직	부득이한 폐업 (직전 6개월 적자 지속,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이직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비자발적 이직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기준보수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일 ~ 210일	120~270일	120~270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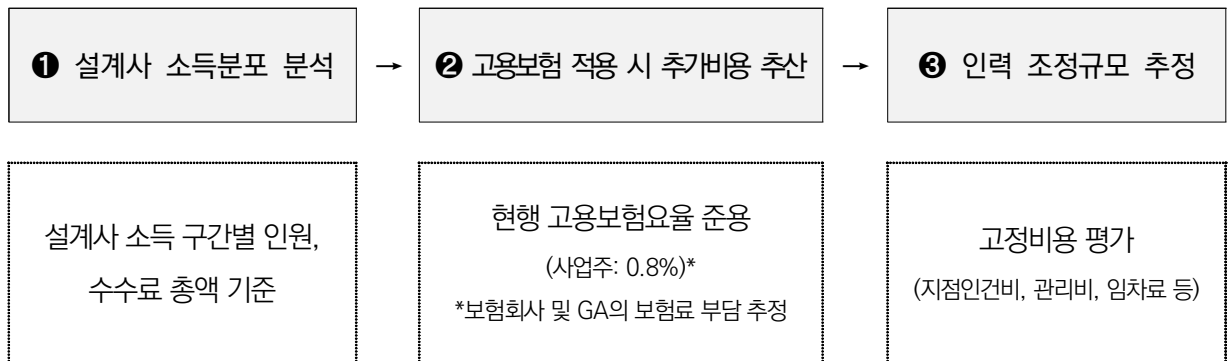
주: 특수고용직의 경우 개정안 기준임

2.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산업의 영향

가. 분석 방법 및 가정

- 고용보험은 가입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하므로 보험설계사의 소득수준 분포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 수준을 추산함

〈그림 3〉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분석 절차



- (1단계) 보험회사 업무보고서상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소득구간별 인원 및 수수료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수준 분포를 파악함
 - 업무보고서상 설계사의 소득분포를 이지만(2018)⁴⁾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재산출함

〈표 2〉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인력과 월평균 소득수준(2019년 기준)

(단위: %, 천 원)

구분	대리점 또는 설계사 수	50만 원 이하	50~100만 원	100~200만 원	200~500만 원	500만 원 초과	월평균 소득
생명보험	89,496	17.3	9.1	17.9	34.8	20.9	3,386
손해보험	92,139	16.4	9.8	18.5	35.3	20.1	2,991
합계	181,125	16.8	9.5	18.2	35.0	20.5	3,193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이지만(2018),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 토론회

- (2단계) 현행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산함
 - 고용보험료 부담을 설계사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험회사 및 GA가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총 수수료에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추산함
 - 이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전체 수수료의 약 33%를 대리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간주함

〈표 3〉 고용보험요율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50~1000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1,000인 이상
근로자	0.8	-	-	-	-
사업주	0.8	0.25	0.45	0.65	0.85

- (3단계)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후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고정비용 절감으로 상쇄한다고 할 때의 인력조정 규모를 추정함
 - 설계사 고용·유지에 필요한 지점 인건비, 운영·관리비,⁵⁾ 임차료,⁶⁾ 기타비용⁷⁾을 (직접)고정비용으로 정의함

나. 주요결과

1) 설계사의 소득수준 및 분포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설계사의 소득 및 생산성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339만 원 수준이며, 월소득 분포는 500만 원 초과자가 20.9%로 가장 많고,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 자는 17.3%임
 - 생산성 측면(구간별 소득합계)⁸⁾에서는 월소득 500만 원 초과 계층이 생명보험 전체 생산성의 51.5%를 차지하며, 월소득 50만 원 이하 계층은 전체 생산성의 1.0%에 불과함

5) 교육훈련비, 광고비, 조사연구비, 접대비, 통신비, 기타(소모품비, 인쇄비, 차량유지비)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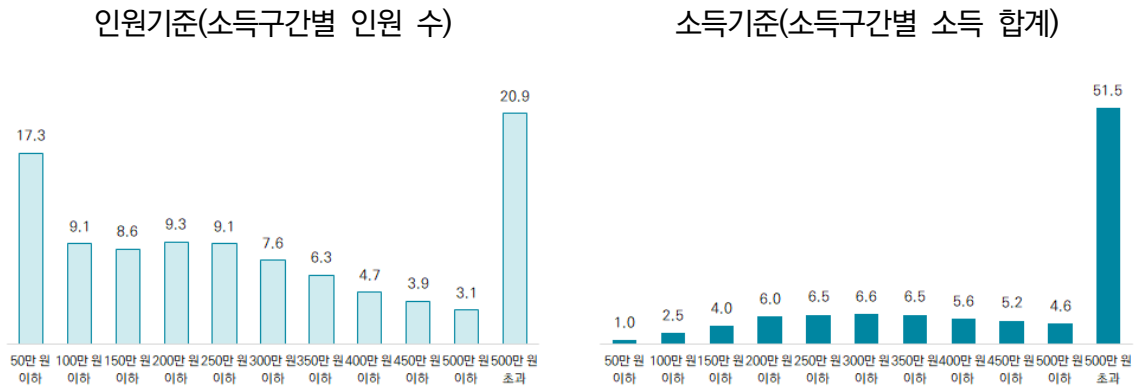
6) 광고선전비, 전산비, 교육훈련비, 임차료(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 조사료 등을 말함

7) 세금과 공과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말함

8)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생산성에 비례하여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볼 때, 해당 소득 집단의 소득 합계를 보험회사에 기여하는 총 생산성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소득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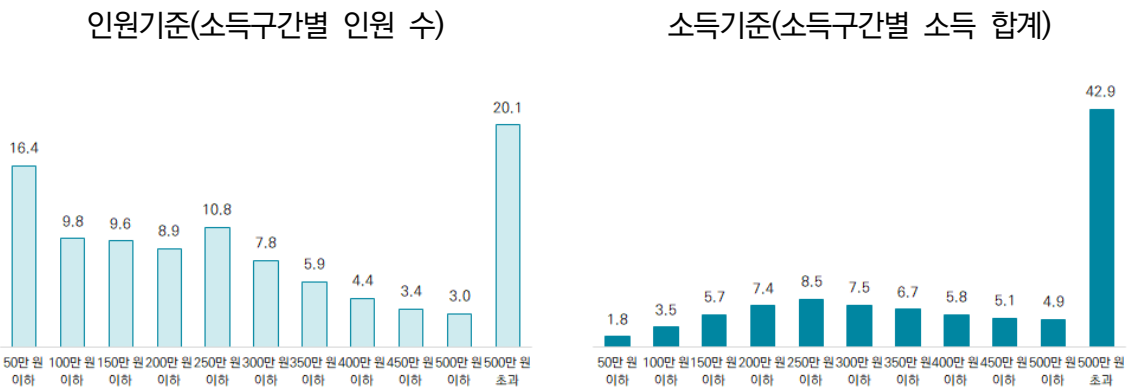


주: 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19)와 이지만(2018)의 연구결과를 통해 재조정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99만 원 수준이며, 월소득 분포는 500만 원 초과자가 20.1%로 가장 많고,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 자는 16.4%임
 - 생산성 측면에서는 월소득 500만 원 초과 계층이 손해보험 전체 생산성의 42.9%를 차지하며, 월소득 50만 원 이하 계층은 전체 생산성의 1.8%를 차지함

〈그림 5〉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소득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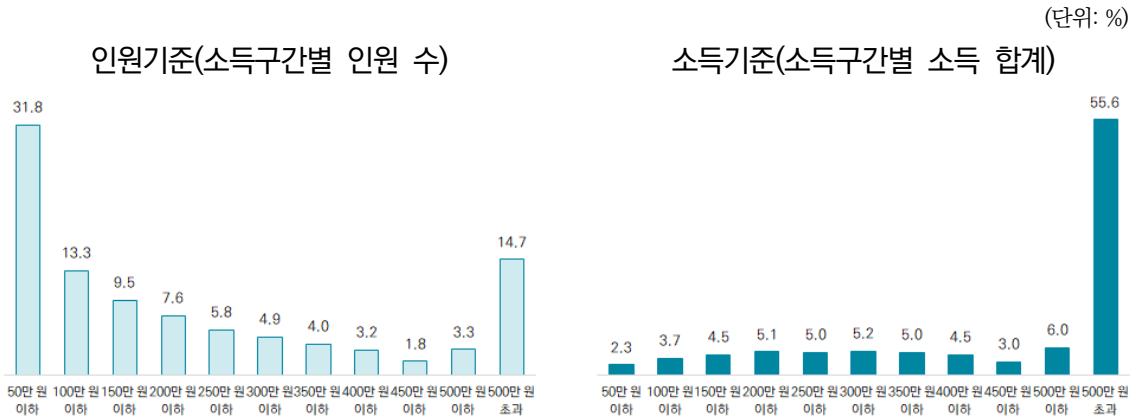
(단위: %)



주: 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19)와 이지만(2018)의 연구결과를 통해 재조정

- (법인보험대리점) GA소속 설계사의 소득분포는 월소득 50만 원 미만자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월소득 500만 원 초과자가 14.7%임
 - 생산성 측면(구간별 소득합계)에서는 월소득 500만 원 초과 계층이 전체 생산성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소득 50만 원 이하 계층은 전체 생산성의 2.3%를 차지함

〈그림 6〉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설계사 소득분포



주: 보험회사 업무보고서(2019)와 이지만(2018)의 연구결과를 통해 재조정

- 설계사 소득분포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50만 원 미만 저소득 설계사 비중과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설계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임

2) 고용보험 적용 시 추가발생비용과 인력조정 규모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설계사가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9,691억 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손해보험,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각각 연간 291억 원, 246억 원, 356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보험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고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정비용 절감으로 상쇄한다고 가정할 때 약 7,035명 규모의 인력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상되는 해촉 설계사 규모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법인보험대리점(GA) 각각 2,240명, 1,960명, 2,835명 수준으로, 현행 설계사 인력(41만 3,895명)의 1.7%에 해당함

〈표 4〉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회사 및 GA의 영향

(단위: 명, 십억 원)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법인보험대리점	합계
현행 설계사 보유인력(2019년)	88,986	92,139	232,770	413,895
고용보험 적용 시 추가비용 ¹⁾²⁾	29.1	24.6	35.6	89.3
예상 인력조정 규모 ¹⁾²⁾	2,240	1,960	2,835	7,035

주: 1) 2019년 전속설계사 인력 및 수수료를 기준으로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고용보험료 부담액을 추정함

2) 현행 보험요금(1.6%)을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